

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,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2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5. 9. 25
발 의 자 : 홍연표 의원
외 8인

1. 제 안 이 유

-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안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및 여비에 관한 출석 일수 계산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-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,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이를 제2조의 출석일수로 본다를 삭제(조례 제3조)
-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원 여비의 지급은 안산시 공무원의 예에 준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(안 제8조)

3. 참 고 사 항

- 대통령령 제1470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

안산시의회의원의 정활동비,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의회의원의 정활동비,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안산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.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출석일수 계산)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 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 나,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이를 제2조의 출석일수로 본다.</p>	(삭 제)
<p>제8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 의원의 <u>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</u> 여는 안산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.</p>	<p>제8조(준용) ----- ----- <u>일비</u> ----- -----</p>